

당진시 외국인여성노동자 현황분석과 일자리 정책과제

윤 향 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yinxiangxi@cni.re.kr

당진시 외국인여성의 체류형태별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한국입국 시 취업지가 결정되어 입국되며 결혼이주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일자리확보가 가능한 반면 재외동포는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방문동거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하며 주거지등록의 불일치에 따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외국인여성의 일자리 정착에 대한 사항으로 재외동포와 방문동거 체류자격자에 대해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서론
2. 충남체류 외국인 현황
3. 외국인여성의 국내이주 취업활동
4. 외국인여성의 일자리 참여현황
5. 외국인여성 일자리 정책 지원
6. 결론

요약

- 당진시 외국인여성의 유형은 다양하며 체류자격별로 취업형태로 구분하며 외국인여성 노동자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거주지등록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음
- 외국인의 한국에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는 취업분야에 제한이 따르며 방문동거(F-1)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당진시 체류 재외동포(F-4)와 방문동거(F-1)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모두 취업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급여가 많고 편안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음
- 한국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와 그들의 가족은 영구정착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며 자녀 교육 등에 매우 관심이 높았음
- 한국입국 시 재외동포와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한국어능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이 한국에서의 취업에서의 안전성의 문제, 자녀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의 한국어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후에 기본을 두어 취업가능 여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방문동거(F-1)의 취업 제한은 재외동포법의 법제도 문제점의 흠결을 보완하여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의 취업허용 운영 방안 검토
- 이들의 취업허용 요건으로 취업에서의 안전성, 지속적인 한국에서의 체류, 자녀 교육 등에 있어 언어의 중요성의 강조하여 한국어능력 입증에 따른 취업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

0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당진시 거주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에 따른 경제활동

-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와 함께 한국 체류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 당진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또한 취업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신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맞는 체류활동을 하여야 함
- 당진시 거주 외국인 여성의 체류형태는 주로 비전문취업(E-9), 결혼이주(F-6),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¹⁾, 거주(F-2)의 체류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한국 입국 시 취업활동의 사업장이 정해진 후 입국을 하고 있음
-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입국 한 결혼이주(F-6)는 취업활동에 자유로우며 취업장의 제한이 없음

- 1) 방문동거(F-1)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방문동거(F-1)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라에 해당된다.
-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경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러나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는 정확한 근로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재외동포에 대한 근로의 제한 요건이 있어 이들의 근로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으로 입국 한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
-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본 후 재외동포(F-4)와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외국인 여성의 지속가능한 일과 삶

- 2021년 충남 15개 지자체 중에서 공주, 아산, 계룡, 청양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인구가 줄어 들었음
- 충남의 5세 이하는 71,610명이며, 65세 고령인구는 408,74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10세 이하 9.05%를 차지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26.99로 10세 이하에 비해 2.98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하는 17.57%로 나타남
- 이처럼 충남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 증가로 인한 충남 안에서의 노동인구 감소
- 노동력 공급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 유입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
- 따라서 외국인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 요구되는 상황임

2. 연구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전후 외국인 여성 일자리 현황

- 코로나19 이전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일을 하는 경우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시작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일시적 근로를 허용하였음
- 코로나19의 감소추세로 외국인의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방문동거(F-1)의 근로에 제제가 가해지며 경제활동에 제약이 나타남

● 이주여성의 노동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인여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검토
- 외국인여성의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에 관한 사항의 선행연구 검토

● 당진시 외국인 여성의 경제 활동의 욕구 파악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류는 가능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동반비자(F-1)여성과 취업은 가능하지만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정해 둔 재외동포(F-4)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고자 함
- 이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의 기회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함

● 동반체류(F-1)여성과 재외동포(F-4)여성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노동 욕구 해결 정책지원 마련

- 충남에 체류 중인 동반체류 여성의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관련 사항에 대한 FGI 실시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여성의 인터뷰는 당진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동반체류(F-1)여성과 재외동포(F-4)의 여성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FGI내용으로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형태, 현재 취업활동 유무, 자신이 원하는 취업기관, 취업욕구, 취업희망에 따른 자신의 노력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음
- 이에 따라 동반체류(F-1)여성과 재외동포(F-4)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규제를 허용
- 더불어 이들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어능력에 대한 기반 필요

02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1.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외국인

- 2022년 5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862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12월 2,524,656명에 비해 511,794명 적게 체류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의 수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간 왕래 자체로 인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재외동포(F-4)가 480,845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이 219,139명, 영주(F-5)자가 169,823명, 결혼이민(F-6)이 134,676명, 방문취업(H-2)이 119,6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에 해당되며 외국인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의 동반 부모(F-1)에 해당됨
-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은 93,45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 거주지역별 등록 외국인은 경기 361,214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지 등록을 하였고, 서울 231,527명, 충남 67,713명(세종특별자치시 4,929명 포함)으로 거주하고 있음
- 외국인의 수도권 거주는 660,156명으로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지역 198,850명으로 18.0%, 충청지역 122,570명, 호남지역 85,067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계	경기	서울	충남(2)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1,105,204	361,214	231,527	67,713	67,415	62,783	51,482	39,894	36,202
	전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대전	강원	울산
	32,973	31,196	27,622	20,898	20,669	18,655	17,892	17,069

출처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22년 5월),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 충남 등록 외국인 현황

- 충남등록 외국인은 62,784명이며 천안시 18,282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지 등록을 하였으며 아산시 16,277명, 당진시 5,058명, 서산시 3,886명, 논산시 3,745명이 거주지 등록을 하였음

<표 2> 충청남도 거주지 등록외국인 현황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충청남도	소계	62,784
	계룡시	181
	공주시	1,901
	금산군	1,932
	논산시	3,745
	당진시	5,058
	보령시	2,821
	부여군	1,193
	서산시	3,886
	서천군	1,248
	아산시	16,277
	예산군	1,952
	천안시 동남구	7,787
	천안시 서북구	10,395
청양군	620	
태안군	1,387	
홍성군	2,401	

2) 세종특별자치시 4,929명 포함

●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에 따르면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외국인 주민은 15,92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남자는 8,079명, 여자는 7,848명이며 천안, 아산, 당진 순으로 체류하고 있음
- 당진시 외국인의 체류는 1,438명이며 이중 외국인 여성의 체류는 691명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중 귀화 및 외국 국적자는 53명이고 여성은 30명, 외국 국적의 국내 출생자녀는 661명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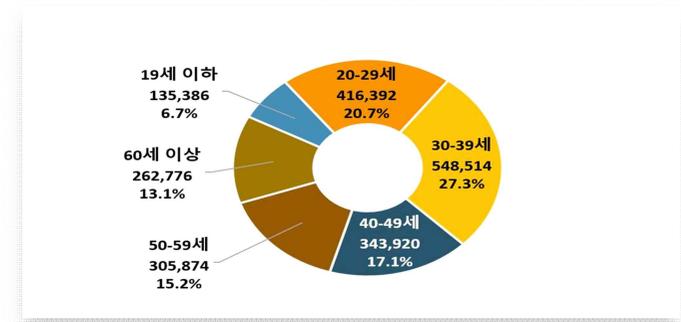
<표 3> 충남 체류 외국인 현황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국내출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충청남도	15,927	8,079	7,848	609	276	333	15,318	7,803	7,515
천안시	3,717	1,862	1,855	201	91	110	3,516	1,771	1,745
천안시동남구	1,617	832	785	85	37	48	1,532	795	737
천안시서북구	2,100	1,030	1,070	116	54	62	1,984	976	1,008
공주시	984	478	506	11	6	5	973	472	501
보령시	692	370	322	20	10	10	672	360	312
아산시	2,532	1,248	1,284	156	67	89	2,376	1,181	1,195
서산시	1,232	664	568	51	23	28	1,181	641	540
논산시	1,212	615	597	33	16	17	1,179	599	580
계룡시	152	82	70	*	*	*	152	82	70
당진시	1,438	747	691	53	23	30	1,385	724	661
금산군	691	331	360	7	*	5	684	329	355
부여군	704	362	342	9	*	6	695	359	336
서천군	353	186	167	9	6	*	344	180	164
청양군	367	193	174	7	*	5	360	191	169
홍성군	768	387	381	23	12	11	745	375	370
예산군	673	353	320	21	13	8	652	340	312
태안군	412	201	211	8	*	6	404	199	205

출처 : 행정안전부(2021.11.17.),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가 많은 연령은 30대이며 다음으로는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으로는 30대의 노동인력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노동인력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1]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

출처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22년 5월)

2. 충남 체류 여성 외국인 현황

● 충남 체류 연령별 여성 외국인 주민현황

- 2021년 11월 통계청의 '시군구별 외국인 여성의 연령별 주민현황'으로 충남의 외국인 여성은 40,46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으로 5,990명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7,75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기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령은 31세에서 39세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충남 연령별 여성 외국인 주민체류현황

행정구역	연령	연령별	2020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충청남도	계	40,460	5,990	7,866	3,411	8,336	14,857	7,750
	0 - 9세	1,495	*	*	*	19	1,476	113
	10 - 19세	1,298	20	52	524	48	654	153
	20 - 29세	10,456	2,069	1,977	2,685	666	3,059	727
	30 - 39세	11,073	1,471	3,154	178	1,882	4,388	3,289
	40 - 49세	6,852	979	1,440	21	1,569	2,843	1,856
	50 - 59세	5,651	1,311	983	*	1,522	1,832	1,079
	60 - 69세	2,768	138	233	*	1,884	513	390
	70세 이상	867	*	27	*	746	92	143

출처 : 통계청(2021.11.18.),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 주민현황(여)'

- 외국인노동자로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으로 한국에 근로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EPS 과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자들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부여되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자격의 배우자(F-1)로 한국에서 근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형태로 체류하는 자들임

03 외국인 여성의 국내이주 취업활동

1. 외국 국적 여성의 국내 이주

● 외국 국적 여성의 국내 입국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함
-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주로 동포방문(C-3-8), 동포방문(C-3-8), 계절근로(E-8), 외국인 노동자(E-9), 결혼이주(F-6), 방문취업제(H-2)를 들 수 있음
- 또한 한국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동반비자(F-1)가 있음

● 동포방문(C-3-8)

- 2014년 4월 1일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3년³⁾ 유효한 동포방문의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취업활동이 불가함

● 계절근로(E-8)

- 농·어반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 계절근로 외국인은 지차철헌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되었으며 이들의 활동범위는 농작물 재배 및 수확과 수산물 원가가공분야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함

3) 2015년 4월 20일 이후부터는 5년의 체류가 가능하다.

● 외국인 노동자(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취업을 허가하는 인력제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가 이에 해당됨
- 허용업종으로는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DL 이에 해당됨
- 주로 외국인남성의 노동이 많지만 외국인여성도 제조업(E-9-1), 서비스업(E-9-5)등에 근로를 위해 입국하고 있음

● 동반비자(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임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이에 해당함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위에 나열된 동반비자(F-1)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

● 결혼이주(F-6)

- 결혼이주로 한국인 남성과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할 수 있음
- 국민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되며,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됨
- 이들은 한국에서의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함

●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3년 간 유효한 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

건⁴⁾을 갖출 경우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됨

- 그러나 취업 목적이 아닌 경우 1년씩 연장이 가능하나 취업 외 목적으로 연장 한 후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됨
- 방문취업제(H-2) 동포는 단순노무분야 48개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함

2. 외국인 여성의 근로에 대한 정부 지원

● 고용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는 외국인고용 지원 사업 운영
-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능력 향상과 한국에서의 적응능력을 위해 한국어교육 38시간, 한국 문화교육 7시간 지원
- 재입국 시 국내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의무 면제와 일하던 사업장에서의 고용 가능

● 체류 및 상담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 법률, 생활, 취업 등의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컴퓨터운영, 무료진료, 예방접종지원 등의 의료복지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 1345를 통한 통역지원서비스를 통한 통역 지원
- 체류 도중 취업활동이 끝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의료지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향위 지원
- 이동진료 신청 시 무료로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X-Ray 진료 차량과 의약품 및 소모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4) 취업목적의 고용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파상풍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지원하고 있음

● 당진시 외국인여성 노동자에 대한 취업 재교육 지원

- 당진시에서 외국인여성에 대한 취업의 재교육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일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가족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빈치 협동조합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일요일에 진행되며 이는 당진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마사지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마을회관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여성으로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3. 방문동거(F-1)의 범위와 제한

●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 시 취업 가능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경우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E-1),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 외 활동이 허가됨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으로 취업활동이 허가되며 학위증, 자격증, 학교장요청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 국가기간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육요원(E-7)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학위증과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필요함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도 가능하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방문동거(F-1)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 방문동거(F-1)의 체류활동 외 활동 신청이 가능한 취업 활동을 제외한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음

- 이는 재외동포의 방문동거(F-1-9)의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 외국인노동자 여성의 한국 생활

● 한국에서 경제력 확보를 위한 노력

- 한국 입국 목적이 본인의 경제적 욕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에서의 근로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진행됨
- 또한,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체류자격 변경요인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며 이는 경제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인노동자 여성의 주거 형태

-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형태는 주로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 동료와 함께 거주하거나 친구와의 거주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주거 형태는 주로 비전문취업(E-9)에 해당되며 특정활동(E-7-4)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함
- 외국인노동자 여성 중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자인 경우에는 주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이들의 주거는 주로 가족과의 생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반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교육

- 특정활동(E-7-4),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고 있는 체류자격임
-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언어는 주로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또한 본국의 언어로 이루어짐
-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참여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언어의 부족으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부적응, 또래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요인은 부모의 한국어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취업을 원한다면 한국어 능력정도의 파악이 요구되는 사항임
- 한국 입국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지 않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와 그의 가족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04 외국인여성의 일자리 참여희망

1. 외국인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연구대상

● 연구 참여자

- 외국인노동자 여성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진 체류 외국인여성으로 함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6>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출신국	나이	한국거주기간	체류자격	가족동반체류
가	카자흐스탄	31	3년	F-1	남편, 자녀 2명
나	카자흐스탄	58	1년	F-4	남편, 딸, 사위, 손주 1명
다	러시아	52	3년	F-4	남편, 자녀 2명
라	러시아	31	4년	F-1	남편, 자녀 2명
마	러시아	29	5년	F-4	남편, 자녀 1명
바	러시아	28	6년	F-4	남편, 자녀 1명
사	러시아	31	4년	F-4	남편, 자녀 2명
아	키르기스스탄	34	6년	F-2(F-1에서 변경)	남편, 자녀 3명
자	키르기스스탄	25	3년	F-1	남편, 자녀 1명
차	키르기스스탄	35	2년	F-1	남편, 자녀 2명

● 분석 방법

- 연구 참여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짐
- 질문을 통해 얻은 한국에서의 취업희망과 취업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답변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 과제 방안 제시가 이루어짐

2. 외국인 여성의 취업희망에 따른 질문항목

● 외국인 여성의 취업 형태 및 취업 희망

- 당진체류 외국인여성의 취업형태 및 취업 요구조사를 위한 질문유형을 체류자격의 취업형태, 현재 취업 유무, 원하는 취업형태, 취업욕구, 취업희망에 따른 자신의 노력 정도에 대한 질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7> 한국에서의 취업요구에 따른 질문 항목

질문유형	질문 내용
체류자격의 취업형태	- 체류자격에 대한 취업 여부
현재 취업 유무 형태	- 현재 하고 있는 일 - 일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 일에 대한 만족도 - 급여수준과 급여에 대한 만족
원하는 취업형태	- 원하는 직업
취업 욕구	- 취업을 원하는 목적(자녀교육비, 주거비 등)
취업 희망을 위한 노력	- 취업을 위한 노력(한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등) - 한국인과의 교류

●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형태

- 외국인 여성 중 한국에서의 근로가 가능한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경우 자신의 취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에서 제한이 있음
- 한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주로 재외동포의 동반 체류자(F-1)를 가진 자들로 이들은

한국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

- 그러나 이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비싼 물가, 자녀교육, 주거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터뷰에 참여한 외국인 여성은 주로 고려인으로 이들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5명, 거주(F-2) 1명, 방문동거(F-1) 4명으로 진행 됨

● 체류자격별 취업 여부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4명 중 1명은 취업을 하고 있으며 3명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함
- 체류자격 재외동포(F-4) 6명 중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1명은 아이가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1명은 일을 그만 둔 지 1달 되었으며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함
- 체류자격 거주(F-2)는 1명으로 현재 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함

● 취업 유무 형태

<표 8> 연구 참여자의 체류자격 별 취업 여부

참여자	취업유무	현재 하고 있는 일	일의 형태	일에 대한 만족도	급여수준
가	유	자동차 부품공장	아르바이트	높음	시급
나	무	일을 찾고 있음	-	-	-
다	유	자동차 부품공장	계약직	낮음	시급
라	무	-	아르바이트	낮음	시급
마	유	화장품공장	계약직	보통	시급
바	무	-	-	-	-
사	유	자동차부품공장	계약직	보통	시급
아	유	학교	계약직	낮음	시간당 2.5만~3만
자	무	-	-	-	-
차	유	볼트공장	계약직	보통	시급

- 연구 참여자 가의 경우 방문동거(F-1)이지만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음

- 연구 참여자 가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남편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하며 야간 및 주말 근무는 하지 않는다고 함
- 연구 참여자 가의 일의 형태는 아르바이트이며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 참여자 중 일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하며 급여는 시급의 형태로 받고 있음
- 또한 방문동거(F-1)에서 거주(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연구 참여자는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 급여는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하는 시간이 주 1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적은 월급을 받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 참여자 중 방문동거(F-1)인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있는 경우에 일을 하며 주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음
- 방문동거(F-1)의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연령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어린이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본인이 아이를 돌본다고 함
- 연구 참여자의 고용형태는 주로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 여성이 원하는 취업형태

-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직업은 주로 힘이 들지 않는 일과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음
- 이는 연구 참여자 10명 모두 동일하게 원하고 있음

● 외국인 여성의 취업 욕구

- 외국인 여성이 원하는 취업 목적으로는 한국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함
- 연구 참여자의 가족형태는 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함
- 생활비는 주로 주거비, 자녀 양육비, 식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의 많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료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그러나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한국인 자녀와 같은 보육과 교육지원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 참여자는 취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음

● 취업 희망에 따른 노력

-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편하고 급여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 실력을 살펴보았으나 한국어 소통에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음
- 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 참여자 아’는 한국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시급이 높은 일을 찾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연구 참여자 아’는 적은 시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급이 높다하더라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음
- 이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여성의 일자리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05 외국인 여성 일자리 정책 지원

1. 취업시간 보장 및 지속적 일자리 기회제공

● 방문동거(F-1)의 취업 시간 보장

- 방문동거(F-1)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D-2)⁵⁾와 일반연수(D-4)⁶⁾와 같은 일할 시간 보장
- 한국에서 방문동거(F-1)⁷⁾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업 시간을 보장하여 이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생활에서의 활력의 장을 찾기를 바람
- 외국인 유학(D-2)의 경우 한국어 능력 3급인 경우 주중 20시간, 주말은 시간 제한 없으며 한국어 능력이 4급인 경우 주중 30시간, 주말에는 취업 시간의 제한이 없음
- 외국인 일반연수(D-4)인 경우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가 이념에도 불구하고 주중 20시간의 취업활동이 허용됨
- 단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아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이유로 방문동거(F-1)의 취업 가능과 함께 취업 시간이 보장 되어야 할 것임

● 방문동거(F-1)의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인한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

- 코로나19의 기간 중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게 되었던 2020년 0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제 근로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였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제 근로에 따른 허용기간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임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7)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F-1)

-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자체와 지자체 관할 농어가가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배정 받은 외국인 인원 수 내에서 운영되었음
- 2020년 3월 26일 방문동거(F-1)자격 체류자가 계절 근로에 참여를 시작하였음
- 2021년 2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재외동포와 그 가족에게 계절 근로에 대한 참여를 추가로 허용하였음
-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방문동거(F-1)의 근로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봄
-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연중 참여 가능하도록 상시화 하였으나 2022년 3월 31일 만료되었음
- 이는 계절제 근로를 위해 한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해석됨

2. 한국에서의 영구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

● 방문동거(F-1)의 영구 정착 목적으로 입국

- 재외동포(F-4)의 자손으로 방문동거(F-1)⁸⁾의 한국 입국 배경은 주로 가족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이며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
- 방문동거(F-1)의 배우자는 재외동포(F-4)이거나 방문취업(H-2)이며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에서 정착을 원하고 있음

● 재외동포 가족에 대한 정부 정책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과제로 비전문취업이민자 유치와 활용사항에서 새로운 취업 이민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고령화에 따른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 등 산업 분야에 우선 지원하며 낙후지역 소재의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비용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
-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한국으로 새로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의 체류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위해 생활하고 있지만 방문동거(F-1)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8) 본 연구에서의 방문동거(F-1)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라에 해당되는 자

방문동거(F-1)의 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개방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체류자격 방문동거(F-1)인 경우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재외동포의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에게 한국어 능력 정도에 따라 한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재외동포법의 법제도에 따른 문제점의 함결보완

- 방문동거(F-1)의 체류 보장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의 허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에 따른 개정이 요구됨
- 한국 입국 다른 체류자격자와의 형평성 논란 야기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과의 차별적 요소로 취업에 제한이 있어 이들은 불법 취업 등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방문동거(F-1)의 경우 집단거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의 절실함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큰 장애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이들은 한국어 교육을 회피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어부족으로 보급인력으로 활용될 수 없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음

- 또한, 자녀의 언어부족현상이 나타나며 자녀의 학업능력 부족 등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부모의 한국어능력 부족과 가정에서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을 늦추는 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외국인여성 방문동거(F-1)의 취업허용 요건으로 한국어 능력 검토

● 방문동거(F-1)의 지속적인 체류지원 확대를 한국어능력에 따라 차별적 허용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그리고 이들의 가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각각 33.5%, 35.3%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한국 내 일자리 정보를 친구나 아는 사람,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됨

● 취업현장에서의 소통의 문제

- 한국으로 입국 시 재외동포에 한해 한국어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국이 가능함
- 이는 다른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차별성을 두고 있으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의 발생도는 매우 높음
- 취업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에 한국어의 중요성

● 영구정착 목적으로의 한국어 필요성

06 결론

1. 외국인여성 노동자 현황분석

● 당진시 외국인여성 노동자 현황

- 외국인여성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결혼이주(F-6),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거주(F-2)의 체류자격 등과 함께 이들의 근로 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음
- 이는 외국인의 거주지 등록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2020년 총남 체류 외국인 여성 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40,46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으로 5,990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7,75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총남 체류 외국인 여성은 7,848명으로 2020년에 비해 98명이 증가하였으며 당진 체류 외국인 여성은 69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진시 외국인여성에 대한 체류자격별 현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여성의 국적별 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당진시 외국인여성의 일자리 유형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한국 입국 시 취업활동의 사업장이 정해진 후 입국이 이루어지며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입국 한 결혼이주(F-6)는 취업활동에 자유로우며 취업장의 제한이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방문동거(F-1)자와

재외동포(F-4)의 제한된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취업의 기회 부여에 대한 희망사항도 함께 진행되었음

2. 당진시 외국인여성의 취업희망 요구 검토

● 당진시 외국인 여성 재외동포(F-4)와 방문동거(F-1)에 대한 취업희망

- 이들의 취업희망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급여는 주로 시급으로 받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일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은 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원하는 취업의 형태는 편하고 급여가 많은 직종을 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전문직에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자녀 돌봄에 따른 취업 중단 발생

- 자녀가 어린 경우 자녀 돌봄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보육료로 인해 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재외동포(F-4)의 경우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 방문동거(F-1)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 발생함

3. 외국인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지원 방안

● 당진시 외국인 여성 방문동거(F-1)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방문동거(F-1)는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음
- 방문동거(F-1)는 취업의 희망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유입이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 의 한시적 근로허용의 사례를 들어 방문동거(F-1)의 취업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의 인력활용과 함께 새로 유입되어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 외국인여성 방문동거(F-1)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취업 허용 요건

-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한국어 능력 입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와 그의 가족임
- 재외동포와 그의 가족은 가족동반 입국과 체류가 가능하며 이들은 한국에서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음
- 이에 취업을 위한 소통 능력에 대한 제한으로 한국어 교육시간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에 한해 입증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취업의 요건으로 하여야 함

● 외국인여성의 한국어능력의 중요성 검토

- 근로현장에서 한국어 소통부족으로 나타나는 안전의 유의
- 자녀교육에 있어 언어적 혼란의 야기
-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의사소통 확장과 한국문화 적응

참고자료

법무부. 2018~202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5월호.

법무부. 2021. 보도자료.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1.12.21.

법무부. 2021.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2021.12.14.

법무부. 2022. 등록외국인 지역별·국적별 현황.

법무부. 2022.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통계청. 2021.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여).

하이코리아. 2021.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표.